

시 정 지 시 서		결	근로감독관	산재예방지도과 과장	지침장
		재	강순갑	황명근	김승환
53016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로 69 (산재예방지도과)					
/전화 055-650-1941 /전송 055-650-1980 /담당자 강순갑 ksk6308@korea.kr					
문서번호	산재예방지도과-1031				
사업장명	삼성중공업(주)거제조선소	대표자	남준우		
소재지	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(장평동)				
관련법조항	시 정 지 시 내 용				시정기한
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제1항	피부질환 의심 성분인 테트라에틸렌펜타민(TEPA, CAS no, 112-57-2)을 함유한 무용제 도료를 취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건강진단 명령 * 첨부한 임시건강진단 시 유의사항 참조				2021.02.26
2021.02.02. 실시한 조선업 집단 피부질환 조사 결과 지적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정지시하니, 이 시정지시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고, 시정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, 시정 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.02.26 까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2021. 02. 03					

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

